

**● 질문**

면세법인입니다. 2월 10일에 매출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, 계산서합계표제출을 하였는데요.. 가산세에 해당되나요?

그럼 가산세 해당시 매출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,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에 1%인지 감면되는지 여부와  
매입세금계산서같은 경우 전자만 있는데 그럴경우도 가산세해당여부알려주세요.

**● 답변**
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 
매출,매입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제출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약 귀 법인이 기한내인 2월 10일에 제출하였다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

**제163조의2 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】**

① 법 제120조의3 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. <개정 2011.6.3, 2012.2.2>

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.

**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【계산서의 작성·교부 등】**

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. (2012. 2. 2. 개정)

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·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(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)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● **상담분류 :** 법인세

● **관련법령 :**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2

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,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 
(결정,판단)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,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.